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임이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045 발의연월일: 2024. 8. 21.

발 의 자:임이자·이종배·김승수

유용원 • 우재준 • 조지연

김형동 · 김위상 · 신성범

정희용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기상청장이 기후·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보급을 위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,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등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안정적인 육성과 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.

이에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,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안정적인 양성 및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23조,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등).

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9757호 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6항을 삭제한다.

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23조(기후변화과학교육사) ① 기상청장은 제23조의3에 따른 기후변 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에서 개설하는 기후변화과학교육사 교육과정 을 이수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
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가 될 수 없다.
 - 1. 피성년후견인
 - 2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
 - 3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- 4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

사람

- ③ 기후변화과학교육사는 기후변화과학교육의 기획·진행·분석· 평가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과학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활용하거나 활 용하게 할 수 있다.
- ⑤ 이 법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가 아닌 사람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7장에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3조의2(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등)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 화과학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. 다 만,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 다.
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
 - 2.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
 - 3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후변화과학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
 - ②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23조의3(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) ① 기상청장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후변화감시예측 전문기관 등을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- ② 기상청장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 - 2. 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
 - 3. 제17조제5항에 따라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
 - 4.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관련 교육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③ 그 밖에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, 지정취소의 절차 ·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4조의2 및 제2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24조의2(청문)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 - 1. 제17조제5항에 따른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취소
 - 2. 제23조의2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
 - 3. 제23조의3제2항제1호·제2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후변 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

- 제25조의2(과태료) ①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 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아 정

법률 제19757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(기후 ·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·개발사업 추진) ① ~ ⑤ (생 략)

⑥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5항에 따라 기후변화감시 예측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 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 야 한다.

⑦ (생 략)

제23조(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양 제23조(기후변화과학교육사) ① 성) ① 기상청장은 제21조에 따른 기후 ·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보급을 위하여 기 후변화과학교육사를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.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후변화과학 교육사가 될 수 없다.
- 1. 피성년후견인
- 2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 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

법률 제19757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(기후・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·개발사업 추진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<삭 제>

(7) (현행과 같음)

기상청장은 제23조의3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에서 개설하는 기후변화과학교 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기후변 화과학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후변화과학 교육사가 될 수 없다.

- 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1. 피성년후견인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 람
- 3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에 있는 사람
- 4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 | 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③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과학 교육사의 자격 등 양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

- 2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 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 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 람
 - 3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에 있는 사람
- 4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 에 따라 자격이<u>상실되거나</u> 정지된 사람
 - ③ 기후변화과학교육사는 기후 변화과학교육의 기획・진행・ 분석ㆍ평가 및 교육 등의 업무 를 수행한다.
 -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과학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 다.
 - ⑤ 이 법에 따른 기후변화과학 교육사가 아닌 사람은 기후변 화과학교육사의 명칭을 사용하

<신 설>

<신 설>

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3조의2(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등)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.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
- 2.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
- 3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 후변화과학교육에 중대한 지 장을 준 경우
- ②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과학 교육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3조의3(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) ① 기상청장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후

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등을 기 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으 로 지정할 수 있다.

- ② 기상청장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
- 3. 제17조제5항에 따라 기후변 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
- 4.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관련 교육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③ 그 밖에 기후변화과학교육 사 양성기관의 지정, 지정취소 의 절차·방법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u><신 설></u>

제24조의2(청문)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 하여야 한다.

- 1. 제17조제5항에 따른 기후변

 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취

 소
- 2. 제23조의2에 따른 기후변화 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
- 3. 제23조의3제2항제1호 · 제2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의 지정취소

제25조의2(과태료) ① 제23조제5 항을 위반하여 기후변화과학교 육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<신 설>